



▶ Classification Drawing

추보(Addendum) 또는 변경지시서(Modification, Change Order, Variation Order, Field Order)의 일부이며, 건축가(Architect)가 발급하는 도면 또는 계약서의 도해(Graphic Interpretation)

▶ Classification

우리나라의 등급순위에 해당한다. 발주국 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이 확인서(Certificate of Classification)의 제출이 입찰시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 Closed Specifications

대체규정 없이 특정제품이나 공법의 사용을 특별히 규정한 시방서

▶ Code of Practice

자재와 업종별로 적정시공기준을 소개한 기술전문 서적

▶ Commencement Date

이를 “착공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착공일은 계약후 발주처가 발급하는 착공지시서(Notice to Proceed, 또는 Notice to Commence, NTP)에서 정한 날이며 만약 착공지시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일(Contract Date)을 착공일로 본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간 착공일을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착공하였느냐, 아니었느냐는 건설계약상의 착공일과 별개의 문제이다. 계약기간(Contract Period)이라 함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이며, 계약일부터 완공일까지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Date of Commencement of the Work로 표기함이 정확하다. 물론 Commencement Date of the Work도 무방하다. 영국계에서는 Date of Enterpris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Compensation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만족할 정도의 보상. 개념상 배상에 해당하며 Indemnity와 같다.

참고로, make good은 보전하다는 뜻이며, reimburse는 상환하다는 뜻이다.

▶ Completion Bond

시공자가 공사의 완공과 인도를 보장하는 보증으로서

Construction Bond 또는 Contract Bond라고 한다.

▶ Completion Date

이를 “완공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확한 개념은 공사의 실질적인 완공일(The Date of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Work)이다.

FIDIC에 의하면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공되어 준공검사(Test on Completion)를 통과한 경우, 감독관은 실질적인 완공일을 명시한 현장인수증명서(Taking-over Certificate : 종전의 완공증명서 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한다. 이날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개시된다.

▶ Condemnation

공동수용과 유사한 성격으로 사유재산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적정보상의 조건으로 공용에 임하는 것, 또는 자산의 사용이 부적격하다는 법적선언(불량판정)을 받는 것

▶ Consent of Surety

이행보증이나 임금, 자재비지불보증서에서 변경지시나 유보금의 금액과 같은 계약사항의 변경 또는 최종기성, 계약사항의 변경, 포기통보 등에 대한 보증인의 서면동의(written consent of the surety), 또는 입찰보증에서 보증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서면동의

▶ Construction Budget

Construction Cost를 충당할 목적으로 발주처가 책정한 건설예산. 일반적인 경우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

▶ Construction Cost

공사의 모든 건설부문의 비용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액과 기타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감독관비 △부지구입비 △통행료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발주처의 책임인 사항은 제외된다.

▶ Construction Documents

계약서류(Contract Document) 중 기술관련 서류로서, 작업도면(Working Drawings)과 시방서(Specifications)를 일컫는다.

▶ Constructive Change

계약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나 공사상 계약사항의 변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공식적인 지시로서 Constructive Variation이라고도 불리운다.

유사한 개념으로 Constructive Notice란 계약사항과 부합되지는 않으나 실제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의사전달을 뜻한다.

▶ Contingency Allowance

향후 예측할 수 없었던 공종의 수행이나 발주처에 의한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 책정된 비용으로 임시비 또는 예비비라고 한다.

이 비용은 △향후 예측할 수 없었던 공종의 수행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비 한다는 점에서 비록 불확정적인 공종이기는 하나 계약서상에 명시된 공종에 대한 비용인 Cash Allowance와 구별된다.

또한 이의 집행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결정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BOQ항목과 차이가 있다. ◉